

급신청인이「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환급신청인의 지위승계를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인 자격 승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의 관할 지세관장(세관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환급업무 부서를 말한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세관장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① (생략)

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 . 다만,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통보서와 제1항제2

○ 환급계좌 변경 절차 간소화

③ (생략)

<신설>

호의 서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①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환급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환급신청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4서식 및 그 증빙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정정신청을 승인 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 영 제18조에 따른 일괄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생략)

②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
용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
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
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
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
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
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
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2. 그 밖에 환급액 증감이 없으나 환급
신청한 물품, 원재료 등이 다른 물품,
원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③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환급신청인
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통보(전자
문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
용승인) ① -----

-----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 추가환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전자첨부 허용

○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⑦ (생략)

-----.

③ 제2항에 -----

----- 경우-----

-----.

⑤ 제2항 및 제3항-----

---.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 신청이 영 제1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도 승인할 수 있다.

⑥·⑦ (현행과 같음)

○ 조항 이동 및 정비

○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 제1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비적용 절차 명확화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
 는 자는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
 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
 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
 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
 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
 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
 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기납증의 발급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서류 등
 해당물품의 이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물품의 입출고내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4호서식
의 ----- 접수통지-----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① -----

○ 조문 정비

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한 후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의 제조·가공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54조(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② (생략)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 문서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

-----.

1. (현행과 같음)

2. -----

----- 제조·가공 물품 및 수탁자가 제조·가공 후 위탁자에게 공급한 -----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탁자 → 위탁자 무상 제공 물품의 기납증 발급 명확화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가 신청하는 분증의 자동 발급 도입

에게 되돌려 준다. <단서 신설>

④ · ⑤ (생략)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 ③ (생략)

④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⑤ (생략)

제62조(반입확인서 신청 접수내역 통보)

① (생략)

② 세관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분증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반입확인서 신청 접수내역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 조문 정비

<p>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의 <u>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u> 사실이 있는지 여부</p> <p>2. ~ 4.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10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3년 1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 ----- ----- <u>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u>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4조(재검토기한) ----- ----- ----- <u>2024년</u> <u>1월 1일</u> ----- ----- -----.</p>	<p>○ 조문 정비</p> <p>○ 재검토기한 재설정</p>
<p>[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제3조의2 관련)</p>	<p>[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제3조의2 관련)</p>	<p>○ 수출사실 확인서류 방법 등 명확화</p>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유형	환급신청인	수출사실 확인서류
6.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는 해당 원재료 중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필증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III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5. 수출물품(개요)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유형	환급신청인	수출사실 확인서류
6.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해당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필증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또는 수리한 물품의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비에 대한 입금증명서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III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5. 수출물품(개요)

○ 환급수출형태 현행화

- 21: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6호)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 (제47조제1항 관련)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㉔)에 해당하는 양도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다.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신청서 2부를 출력하여 제61조, 제66조 및 제72조에 따른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1] 환급대상수출물품

- 21: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6호),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물품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 (제47조제1항 관련)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㉔)에 해당하는 양도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기납증을 발급받는 자, 양도자)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다.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제61조, 제66조 및 제72조에 따른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1] 환급대상수출물품

- 작성요령 명확화

- 작성요령 정비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작성요령(제70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라. 정정 및 취하 방식

- 란삭제 : 삭제할 란 번호만 기재한다.
- 란정정 : 정정할 란 번호와 정정 전 내역, 정정 후 내역을 기재한다.
 - ※ 란 정정과 삭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 란 삭제 후 다른 란 번호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 <신 설>

- 취하 : 신청구분에 '2'(취하)를 기재하고 공통사항 및 란 사항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2. 작성 방법

- ※ 정정가능 항목번호 및 항목명

(공통사항)

- 11A : 반입(적재)장소, 11B : 작업선, 11C : 작업선선박번호, 11D : 운송차량번호, 12 : 선박호출부호 13 :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작성요령(제70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라. 정정 및 취하 방식

- 란삭제 : 삭제할 란 번호만 기재한다.
- 란정정 : 정정할 란 번호와 정정 전 내역, 정정 후 내역을 기재한다.
 - ※ 란 정정과 삭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 란 삭제 후 다른 란 번호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 란추가 : 수입상태 그대로 반입한 물품(㉔구
분부호 1. 원상태)이 수입신고서 상의 란 변
경으로 란 번호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추
가할 란 번호를 기재한다.

- 취하 : 신청구분에 '2'(취하)를 기재하고 공통사항 및 란 사항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2. 작성 방법

- ※ 정정가능 항목번호 및 항목명

(공통사항)

- 11A : 반입(적재)장소, 11B : 작업선, 11C : 작업선선박번호, 11D : 운송차량번호,

- 원상태 반입 물품의
란정정 방식 확대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
확인서 정정 시 표준증빙
자료 마련

입항보고제출번호(MRN), 14 : 구분부호,
15 : 환급신청인, 16 : 총포장갯수, 18 :
총중량(KG)

- <신 설>

(란사항)

- 21 : 품명 및 규격, 22 : 물품식별번호,
23 : 품목번호, 24A : 수량, 24B : 단위,
25 : 순중량(KG), 26 : 공급금액
(FOB\), 27 : 포장갯수, 28 : 포장종류,
29 : 근거서류 종류/번호, 30 : 구매주문
서번호, 31 : 반입일자,
32A: 원상태근거번호, 32B: 원상태근거
서류종류

- <신 설>

<신 설>

12 : 선박호출부호 13 :

입항보고제출번호(MRN), 14 : 구분부호,
15 : 환급신청인, 16 : 총포장갯수, 18 :
총중량(KG)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정정 시
표준증빙서류: 출하전표, 연료유 영수
증(Bunker Delivery Receipt) 등

(란사항)

- 21 : 품명 및 규격, 22 : 물품식별번호,
23 : 품목번호, 24A : 수량, 24B : 단위,
25 : 순중량(KG), 26 : 공급금액
(FOB\), 27 : 포장갯수, 28 : 포장종류,
29 : 근거서류 종류/번호, 30 : 구매주문
서번호, 31 : 반입일자,
32A: 원상태근거번호, 32B: 원상태근거
서류종류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정정 시
표준증빙서류: 인보이스(Invoice), 물품 공급
전·후 주문서(Order), 출하전표, 연료유 영
수증(Bunker Delivery Receipt) 등

[별지 제3호의4서식] 환급신청서 정정
신청(승인)서

○ 정정절차 마련에 따른
서식 신설

환급신청서 정정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15일

① 제출번호		② 환급 지세관	XXX	
1. 신청인	③ 상호	④ 대표자		
	⑤ 연락처	⑥ 구분	1. 환급신청인 2. 관세사	
2. 환급신청인	⑦ 상호	⑧ 성명		
	⑨ 사업자번호	⑩ 통관고 유부호	⑪ 연 락 처	
3. 환급신청서 내역				
⑫ 접수번호		⑬ 결정일 사	YYYY-MM-DD	
4. 정정 내용				
⑭ 신고서 구분	⑮ 연번	⑯ 정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수입원재료별)	⑮ 연번- 00002	⑯(00)신고번 호-란-규격	11111221111 1M-002-01	11111221111 1M-002-02

⑯ 정정 사유 (간략히 기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을 신청합니다.

YYYY년 MM월 DD일(신청일)

신청인 XXXXXXXXXXXX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정정을 승인합니다.

YYYY년 MM월 DD일(과장결재일)

XXXXXXXXXX 세관장

□ 작성요령

항 목	설 명
① 제출번호	○ 환급신청서 정정신청서의 심사결과 통지를 위하여 필 요한 번호- 신청인부호(5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

	(N+숫자 4자리)
② 환급지세관	○ 정정신청하는 세관명 기재
1. 신청인	
③ 상호	○ 환급신청서 정정신청인의 상호·대표자·연락처 기재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 정보 기재)
④ 대표자	
⑤ 연락처	
⑥ 구분	
2. 환급신청인	
⑦ 상호	○ 환급신청인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기재
⑧ 성명	
⑨ 사업자번호	
⑩ 통관고유부호	
⑪ 연락처	
3. 환급신청서 내역	
⑫ 접수번호	○ 정정신청하는 환급신청서의 접수번호 기재
⑬ 결정일자	○ 정정신청하는 환급신청서의 결정일자 기재
4. 정정 내용	
⑭ 신고서 구분	○ [1] 수출물품(을), [2] 수입원재료(병) 중 선택
⑮ 연번	○ 정정 신청하는 수출물품(을)과 수입원재료(병)의 행 일련번호
⑯ 정정 항목	○ 수출물품(을): ㉠단위 □항목 ○ 수입원재료(병): ㉠ 사용량(단위), ㉡공제구분, ㉢ 비율 □항목
⑰ 정정 사유	○ 정정 신청 사유를 간략히 기재